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관련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

---

2021. 12.

교 육 부  
(대 학 학 사 제 도 과)

#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	1
II.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개요 .....	3
1.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	4
2. 교육과정 구성 .....	6
3. 학사 관리 .....	8
III. 승인 기준 및 절차 .....	10
1. 승인 기준 .....	10
2. 승인 절차 .....	11
3. 승인심사위원회 .....	11
4. 승인 기간 .....	12
5. 자체 점검 및 보고 .....	12
6.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12
7. 경과 규정 .....	13
IV. 향후 일정 .....	14

##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II-1-①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대학	신설 (p.4)	• 교육과정 제공 가능 대학에 ‘원격대학’ 포함
	개정 (p.4)	• (기존) 행정처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제한 → (수정) 해당 내용 삭제
II-2-②. 수업 방식	신설 (p.4)	• 원격수업 운영 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21.2.)」 준수 (훈령 내용을 반영하여 원격수업 개설 비율(20%) 제한 삭제 등)
II-2-③. 국내대학 교원에 의한 수업	개정 (p.7)	• (기존) 전임교원에 의한 수업으로 학기별 개설 교과목의 4분의 1 구성 → (수정) 「고등교육법」 상 ‘강사’에 의한 수업을 포함하여 4분의 1 구성
	신설 (p.7)	• 국내 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수업에 ‘원격수업’ 포함
II-3-②. 참여 가능 학생	신설 (p.8)	• 내국인 학생 참여 제한적 허용
II-3-④. 등록금 등	개정 (p.9)	• (기존) 수업료 등 → (수정) 등록금 등으로 용어 수정
III-①, ②, ③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신설 (p.10)	• 승인 기준·승인 절차·승인심사위원회 구성 등 명확화
III-⑥.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신설 (p.12)	• 제재 대상에 동 기준에 따른 승인 없이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포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 □ 추진 배경

- 대학이 분교·캠퍼스와 같은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 □ 추진 경과

-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및 국내대학 교육프로그램 수출 촉진 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 : '16.12월
  -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프랜차이즈) 제도 도입 계획 등 발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18.5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신설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 : '18.10월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신청 : '19.3월~4월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3개교) : '19.8월
  - ※ (승인 대학) 인하대-우즈베키스탄, 부천대-우즈베키스탄, 동아대-베트남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승인 기준 완화 방향\* 등을 포함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 '19.8월
  - \* (주요 내용) 다양한 분야의 교원 확보, 참여 학생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 : '19.10월
  - ※ (주요 개정사항) 운영기준 마련 이전부터 운영하던 과정에서도 교육의 질 관련 요건 충족 시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경과규정 마련

< 참고1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법적 근거 >

◆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 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3.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참고2 : 대학혁신지원방안('19.8.) 중 프랜차이즈 제도 관련 내용 >

□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해외 진출 활성화**

-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서 운영하고, 과정 이수 학생에게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진출 활성화」
- 다양한 분야의 교원 확보, 참여 학생 확대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규제 개선 주요 내용('20년 이후부터 적용 가능) >

구분	현행	개선
교원자격	▶(정보공시기준) 전임교원	▶(정보공시기준) 전임교원 + 강사
학생자격	▶내국인 참여 불가(학부)	▶내국인 참여 제한적 허용(학부)

## II.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개요

###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의 개념

- (개념)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일명 '프랜차이즈' 제도

구분	트위닝 (twinning)	프랜차이즈 (franchise)	합작학교 (alliance/network)
개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협약된 공통의 교육 과정을 분담·운영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서 <b>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b> 하게 하고, <b>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b> 하는 제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약을 맺고 <b>제3의 새로운 대학을 설치</b>
학생 이동	이동	이동하지 않음	이동하지 않음
수업 장소	외국대학에서 전반부, 국내대학에서 후반부 교육(1+3, 2+2, 3+1 등)	외국대학에서 실시	외국대학에서 실시
학위	공동·복수학위	국내대학 학위	신설대학 학위 공동·복수학위

### [ 기본 원칙 ]

-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의 훼손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 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 교육과정 운영의 전제가 되는 학위과정의 종류, 학기 운영, 학점당 이수 시간, 수업 일수 등 학사제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법령 규정을 준용**
-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 이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적용되지 않음

# 1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 1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대학

- (교육과정 제공 가능 국내대학)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
  -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 유예 대학 및 불인증 대학, 대학원대학은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은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인증 기관 미지정 으로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로 대체

⇒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 A~D 등급 중 B등급 이상만 허용

❖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로 대체

⇒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A~E 등급 중 B등급 이상만 허용

- (교육과정 운영 가능 외국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

## 2 대상 학위 과정

- (국내대학 학위 과정) (전문)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 모두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가능

※ 대학 유형별 제공 가능한 학위과정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외국대학 학위 과정)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인 경우에만 교육과정 제공·운영 가능

\* 전문학사학위 간, 학사학위 간, 학.석사학위 간, 석사학위 간, 석.박사학위 간, 박사학위 간 등 동일한 학위과정 간에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대학원의 경우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국내 대학원과 종류가 다른 외국 대학원에는 교육과정 제공 불가

### 3 교육과정 제공 분야

- (교육과정 제공 가능 분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대학의 교육 이념 및 교육 목표,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제공이 필요하다고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로 함
- (교육과정 제공 제한 분야) 전공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원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제공 제한
  - (①교원 양성 관련 학과) 안정적 인력 수급 균형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및 국내대학 학위 수여는 가능하지만,  
⇒ 다만 교원 자격증 취득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불가
  - (②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 전공 교육의 전문성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보건·의료 인력 양성분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 (기타 보건·의료 인력 양성 분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안경사,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고등교육법상 정원 관리 분야는 아니지만, '04년 이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정원배정 관련 협의한 분야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분야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제한

❖ 단, 상기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무관한 학과는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그 외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관되는 전공(학과)의 경우 추후 승인심사를 통해 교육과정 제공 제한 가능



## 2 교육과정 구성

### 1 교과목 구성

- (교과목 구성)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전공·교양 등 교과 유형별 필요 이수 학점 수는 국내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 ※ (예) 국내대학에서 해당 전공의 이수 요건으로 전공 필수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20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
- 각 유형별 교과목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 간 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 가능
- (학점당 필요 이수 시간)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교과목별로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
  - 이 경우, 각 교과목별로 국내대학에서 적용한 학점 당 이수 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운영

### 2 수업 방식

- (수업 방식) 수업은 협약 및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 수업, 야간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 계절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운영)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야 함
  - \* (주요 내용)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학칙 등 규정사항, 강의 평가 실시,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구성,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시설 및 설비 등
- 원격수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비, 인력 등이 갖추어져야 함
- (사용 언어) 수업에서 사용될 언어는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의 제1언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 활용이 가능하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하여 통역을 수업 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

### 3] 국내대학 교원에 의한 수업

- (전임교원 등의 수업 비율) 교육과정상 해당 학년도 각 학기별로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 수의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하는 수업으로 구성
  - 단, 원격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직접 담당하는 수업에 포함
- (교원 배정)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교육과정 구성
  - 단, 전공의 특성상 전공 필수 교과목의 학점 수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 외의 교원을 배정하여 수업 운영 가능

#### [ 전임교원 인정 범위 ]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국공립대학교원)」 또는 「사립학교법(사립대학 교원)」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 ②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 ③ 「공무원연금법§3」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에 따라 연금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6」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 ④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지급
- ❖ 기금교수\*
  -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교수
  - 상기 ①, ②, ④의 조건과 함께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6」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된 교원
- ❖ 산학협력 중점 교수\*
  -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사립대학) 교육부 산학협력 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3 학사 관리

#### ① 학기 구성 및 수업 일수

- (학기 구성) 학기 운영은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년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가능
- (수업 일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전체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기준으로 30주 이상 운영
  - 교과목별 수업 일수는 전체 수업 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학과 달리 운영 가능
    - ※ 집중이수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위해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 필요

#### ② 참여 가능 학생 범위

- (외국인 학생 참여 원칙) 동 제도가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외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 국내 학생의 우회 입학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운영
  - 외국인의 범위는 ①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②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
- (내국인 학생 제한적 허용)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이 있는 내국인을 전체 정원의 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모집 허용

### 3 학점 인정 및 학위 수여

- (학점 인정)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전부를 교육과정을 제공한 국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 ※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학생이 국내 방문 교육 희망 시, 교육과정을 제공한 국내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일부 이수 가능
- (학위 수여) 해당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협약 및 학칙 등으로 정한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내대학 학위 수여 가능
  - 학위 수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협약 및 학칙 등으로 정함

❖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수여이므로, 국내대학 학위 외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공동·복수 학위 형태로 수여되는 것은 지양 필요

### 4 등록금 등

- 등록금(입학금 포함) 등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금의 산정과 배분에 관하여는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록금 등을 국내대학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책정 가능

###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

-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체결되는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①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②협약의 목적 및 기간 ③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④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⑤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⑥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⑦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⑧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⑨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⑩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Ⅲ.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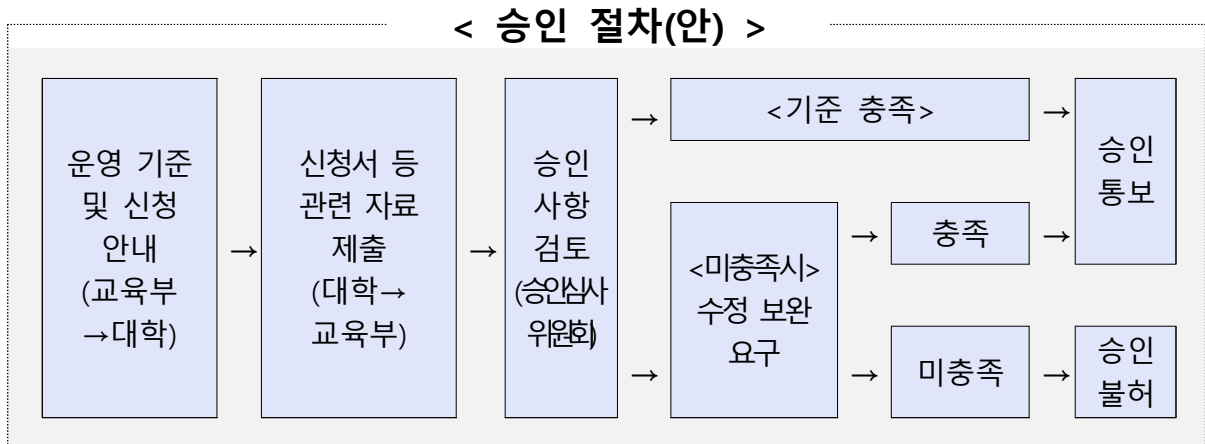
#### ① 승인 기준

- 기본 요건(소극 요건 및 적극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 등에 대한 본심사를 실시
-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운영 승인

구분	심사 항목	주요 심사 내용
기본요건 검토 (교육부)	소극 요건	①고등교육기관평가 등 미인증 대학 여부 ※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 정부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이 아닐 것 ②교육과정 제공 제한 전공 분야가 아닐 것 등
	적극 요건	③국내외 대학 간 학위과정의 동등성 여부 ④전공-교양 등 유형별 교육과정 구성의 적격 여부 ⑤국내대학 전임교원 수업 비율 ⑥원격수업 활용의 적격 여부 ⑦참여 가능 학생 범위 등 ⑧학위수여 등
본심사 (승인심사위원회) ※ 서면으로 진행, 필요시 대면 심사 가능		▶ 기본요건 검토 결과 확인 ▶ 중점 확인 필요사항 검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lt;중점 확인 필요 사항&gt;                          ①교육과정 제공·운영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현지 국가의 해당 전공 분야 인력 수요 현황 및 전망 등)                          ②교육과정 제공·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국내대학의 교육역량(외국대학과의 교류 경험, 국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과의 비교 등)                          ③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교원 신규채용 여부, 기존 교원의 동의 여부 등)                          ④외국대학 교류 분야의 교육여건(교원, 교육시설 등) 적정성                          ⑤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등록금, 수익금 배분 계획 및 학위의 종류 등                     </div>
심사 결과		▶ 기본요건 및 중점 확인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2 승인 절차

- (대학)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은 승인 신청 기간 내에 **협약서 초안**(증빙자료 등 포함) 및 신청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교육부) 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시 고등교육 관계 법령 또는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국내대학의 장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
  -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승인을 불허,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학위 과정 운영 가능



## 3 승인심사위원회

- (기능)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승인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구성) 위원장 포함 6인 내외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1인, 외부위원은 학계 전문가 5인 등으로 구성
  - 내부위원(1명) : 담당과장(의결권 없음)
  - 외부위원(5명) : 대학 행정 및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로 구성

#### 4 승인 기간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최대 5년 간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이 가능
-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승인 필요

#### 5 자체 점검 및 보고

- (자체 점검)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한 국내대학의 장은 매 학기 관련 업무 담당자를 외국대학에 파견하여 운영 상황 점검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충족 여부 등 주기적 점검
- (점검 결과 보고) 점검 결과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안의 경과 및 조치계획 등 즉시 보고
  -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를 매 2년마다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에 탑재

#### 6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제재 대상) 교육과정 제공·운영과 관련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조치 부과
  - 고등교육 관계 법령 또는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동 기준에 따른 승인 없이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포함
  - 협약서, 학칙 등 대학의 규정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제공·운영한 경우
  - 교육과정 제공·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자체 평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 및 공개한 경우 등

-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등)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근거하여 시정·변경 명령
  -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명령 등 불이행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내대학에 대한 학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부과
- (교육과정 제공 제한 등)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제공 제한, 관련자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 예정

## 7 경과 규정

- 동 운영기준이 마련되기 이전(2019.8.31. 이전)에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한 교육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봄
  -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 수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로 진행
  -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IV. 향후 일정

---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 및 안내 : 12월 4주
- 대학별 승인 신청서 접수 : 12월 4주 ~ '22년 1월 중순
- 대학별 승인 사항 통보 : '22년 1월 중

<< 심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 1. 심사신청서 작성 요령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숙지 후 작성
- 본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 목차는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 해당 없는 목차에는 '해당 없음' 기재
- 인용자료 및 데이터 등의 출처 명시
- 신청에서 제시된 '[작성방법]'은 삭제 후 작성·제출

※ 신청서의 데이터 오류, 내용 불일치 등의 경우, 불승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의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불가)

## 2. 신청서 규격

- 용지 규격 : A4종(세로)
- 작성 : 워드프로세서 (한글)
  - 본문 15포인트 휴먼명조체, 주석 13포인트 중고딕체, 표 11포인트 휴먼명조체, 장평 100, 줄간격 160
  -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0, 꼬리말 0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규격 양면 인쇄(양면인쇄 제본)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로 작성, 심사신청서와 합철하여 제본
  - 심사신청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심사신청서는 본문 및 증빙 포함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3. 제출 서류

- 제출공문 : 대학별 전자공문 1부(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포함)
- 심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2'번 항목 참조
  - 심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6부(총장 직인 원본 1부 포함, A4용지 크기)
    - ※ 스프링철 불가, 심사신청서와 첨부자료 1권으로 합철
- USB(심사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포함한 전문 수록) 대학별 1개
  - ※ 대학을 식별할 수 있도록 USB 겉면에 표기하고, 파일명을 'OO대학교\_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심사 신청서'로 기재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심사 신청서**

2021. 0.

기 관 명

# 목 차

I. 심사 신청 개요 .....	
II.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III.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충족 여부 .....	
①.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	
1.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대학 여부 .....	
2. 신청 학위과정 .....	
3. 신청 전공 분야 .....	
②. 교육과정 구성 .....	
1. 교과목 구성 .....	
2. 수업 방식 및 언어 .....	
3. 담당 교원 .....	
③. 학사 관리 .....	
1. 학기 구성 및 수업 일수 .....	
2. 참여 학생 .....	
3. 학점 인정 및 학위 수여 .....	
4. 등록금 등 수익금 배분 계획 .....	
④. 기타 사항 .....	
1. 외국대학의 교육여건 .....	
2. 운영기준 충족여부 점검계획 .....	
[증빙00] 00000 00000 .....	

# I. 심사 신청 개요

연번	구 분	내 용
1	국내대학 명칭	한국대학교 ※ 분교 또는 캠퍼스는 '한국대학교(분교)'로 기재
2	외국대학 명칭, 소재국가, 인증여부	호치민 대학교 / 베트남 / 인증기관명
3	교육과정 제공 전공 또는 학과	국제무역학과 또는 국제경제전공
4	학위의 종류	학사 / 석사 / 박사 / 통합학위과정 중 택1
5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기간 및 운영 학기	4년, 매년 2학기
6	교육과정 참여 학생 및 규모	· 총 00명(a+b) - (외국인, a) 00명 - (내국인, b) 00명

우리 대학은 위와 같이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심사 신청을 하며, 심사 결과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신청자	○○대학교 총장	○○○ (인)
-----	----------	---------

## II.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

\*

### 【작성 방법】

- 1)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 기술
  - 해당 국가의 해당 전공에 대한 교육수요, 해당 국가의 해당 전공 분야와 연관된 인력양성현황 및 인력수요현황,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풍부하게 작성
  - 국내대학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 및 교육과정 제공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설명 제시
  - 해외 대학과의 교류 경험 등 국내대학의 국제적 교육 역량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제시
- 2) 구체적 수치 또는 인용 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 자료 제시

### Ⅲ.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충족 여부

#### 1 교육과정 제공 주체 등

##### 1.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대학 여부

○ (국내대학의 고등교육 기관평가 인증 여부)

-

\*

○ (외국대학의 인증 여부)

-

\*

#### 【작성 방법】

- 1) 각각의 해당 여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되,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의 인증 여부에 대해 본문에 간략히 서술
- 2) 원격대학의 경우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 제시, 교육대학의 경우 기관평가 결과 대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제시
- 3)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외국정부 또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 2. 신청 학위 과정

대상 학위과정	대학 / 단과대학 / 대학원 명칭	대학원 유형 (일반, 전문, 특수)		학과(전공)
		국내대학	외국대학	

○

-

\*

### 【작성 방법】

- 1) 학위과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작성
- 2) 대학원인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각각 작성하되, 외국대학의 유형 구분 체계가 국내대학과 다를 경우 본문에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 유형의 유사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3) 증빙자료 제출



### 3. 신청 전공 분야

○

-

\*

#### **【작성 방법】**

- 1) 운영 기준 상의 교육과정 제공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지 작성
- 2) 교원양성관련 학과의 경우 교원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을 명확히 작성
- 3) 증빙자료 제출

## 2 교육과정 구성

※ 운영할 교과목을 학기별로 [표]에 기입, 추가적인 서술이 필요한 경우 [표] 아래에 작성

학과(전공)	○○학과(전공)				학위과정 (학사,석사)	석사				
1. 교과목 구성					2. 수업 방식 및 언어		3. 담당 교원			
개설 학기 (학기 기간)	과목명 (구분)	학점	대상 학년	교과별 수업일수	수업 방식	사용 언어	국내대학 교원			외국대학 교원
							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 기타 비전임 교원	
1학기 (22.0.0~22.0. 0)	○○개론 (전공필수)	2학점	1학년	매주 목, 19:00~22:00, 3시간, 15주, 45시간	'대면' 또는 '원격'		○ 또는 x	○ 또는 x	○ 또는 x	○ 또는 x
2학기 (22.0.0~22.0. 0)	○○세미나 (교양필수)	1학점	1학년	매주 목, 19:00~22:00, 3시간, 15주, 45시간						
2학기 (22.0.0~22.0. 0)	○○연구 (전공선택)	1학점	1학년	매주 목, 19:00~22:00, 3시간, 15주, 45시간						

# 1. 교과목 구성

○

-

\*

## 【작성 방법】

1)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교과 유형별 필요 이수 학점\*의 국내대학과 동일 여부 등 국내대학과 교육과정 구성의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작성

\* (예) 국내대학에서 해당 전공의 이수 요건으로 전공 필수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20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내대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공을 설치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 전공과의 교육과정 구성의 유사성 여부에 관하여 작성

2) 담당 교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원이 국내 또는 외국대학 교원인지 여부, 전임교원 또는 강사 여부, 세부 전공 등 작성

3) 동 교육과정 수료 시 국내대학의 학위가 수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2. 수업 방식 및 언어

### ○ 수업 방식

-

\*

### ○ 사용 언어

-

\*

#### **【작성 방법】**

- 1)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의 준수 여부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상세히 작성
- 2) 교육과정 운영 시 사용할 언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 통역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도 작성

### 3. 담당 교원

○

-

\*

#### 【작성 방법】

- 1) 교육과정상 해당 학년도 각 학기별로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 학점 수의 4분의 1 이상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하는 수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작성
- 2)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는지 작성
- 3) 표 외에 국내대학 교원 수업에 대한 설명 및 교원 파견 및 총원 계획 상세히 작성하고, 신규 교원 채용 없이 기존 국내대학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소속 교원들의 동의 여부에 관한 내용도 작성

### 3 학사 관리

---

#### 1. 학기 구성 및 수업 일수

##### ○ 학기 구성

-

\*

##### ○ 수업 일수

-

\*

#### **【작성 방법】**

- 1) 교육과정 운영 시 학기 구성 방식에 관하여 작성(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적용 여부 등)
- 2)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전체 수업 일수에 관하여 작성

## 2. 참여 학생

대상 학위과정	학과(전공)	모집공고 예정인원(a+b)	외국인 학생(a)	내국인 학생(b)
		00명	00명	00명
		비율(%)	$(a/a+b)*100$	$(b/a+b)*100$

○

-

\*

### 【작성 방법】

- 1) 학생 선발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본문에 상세히 작성
- 2) 내국인 학생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입학 자격 및 정원에 대하여 작성

### 3. 학점 인정 및 학위 수여

#### ○ 학점 인정

-

\*

#### ○ 학위 수여

-

\*

#### **【작성 방법】**

- 1)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인정 방식에 관하여 작성
- 2) 학위수여의 주체, 학위기에 반영될 학과 및 전공 명칭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작성
- 3) 운영기준에서 공동·복수학위 수여는 지양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부득이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작성



## 4. 등록금 등 수익금 배분 계획

○

-

\*

### 【작성 방법】

- 1)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국내대학에서의 등록금 내역 기재
- 2) 내외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내역 기재
- 3) 국내외 대학 간 등록금 분배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 기재
- 4) 등록금 외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익금 일체 기재
- 5) 장학금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 기재

## 4 기타 사항

### 1. 외국대학의 교육여건

#### ○ 강의실 현황

-

\*

#### ○ 자료실, 기숙사, 교육기자재 등 기타 교육 시설 및 설비 현황

-

\*

#### ○ 교원 현황

-

\*

#### ○ 기타 교육 여건

-

\*

#### 【작성 방법】

- 1) 외국대학의 일반 현황을 개괄적으로 작성하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분야의 현황을 상세히 작성
- 2) 강의실, 자료실 등 시설 및 교육 기자재 등의 도면 및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

## 2. 운영 기준 충족 여부 점검 계획

○

-

\*

### 【작성 방법】

- 1) 매 학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대학 본부 차원의 점검 계획에 대해 기술